

Ⅲ. 예산총칙



제1조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계	11,252,717,000	337,581,510
일 반 회 계	9,757,400,000	292,722,000
특 별 회 계	1,495,317,000	44,859,510
기 타 특 별 회 계	1,495,317,000	44,859,510
의 료 급 여 기 금 영	711,156,000	21,334,680
치 수 사 업	4,907,000	147,210
광 역 교 통 시 설	3,220,000	96,600
발전소등지역자원시설세	121,211,000	3,636,330
학 교 용 지 부 담 금	62,853,000	1,885,590
낙 후 지 역 발 전	10,000,000	300,000
소 방	581,970,000	17,459,100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5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197,900,000천원으로 한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에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IV.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 감 비 율
계	11,252,717,000	10,654,809,000	597,908,000	5.61%
일 반 회 계	9,757,400,000	9,332,000,000	425,400,000	4.56%
특 별 회 계	1,495,317,000	1,322,809,000	172,508,000	13.04%
기타특별회계	1,495,317,000	1,322,809,000	172,508,000	13.04%
의료급여기금	711,156,000	639,329,000	71,827,000	11.23%
치 수 사 업	4,907,000	8,702,000	△3,795,000	△43.61%
광역교통시설	3,220,000	12,010,000	△8,790,000	△73.19%
발 전 소 등 지역자원시설세	121,211,000	87,082,000	34,129,000	39.19%
학교용지부담금	62,853,000	68,126,000	△5,273,000	△7.74%
낙 후 지 역 발 전	10,000,000	5,700,000	4,300,000	75.44%
소 방	581,970,000	501,860,000	80,110,000	15.96%